KRi

Paradigm : Leader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용역협력업체 업무협약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이하 "갑" 이라 한다)와 **다이나타코리아 유한회사** (이하 "을" 이라 한다)는 "갑"이 지정한 용역업무와 관련한 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의 **[2102008_C01] 싱가폴 퀵서베이** 개별 용역계약에 필요한 제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상호간 성실히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존중 및 신뢰)
"갑"과 "을"은 상호 존중과 신의로써 본 협약의 이행은 물론이고 본 협약에 수반한 협력사항 발생 시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 3 조 (업무협약 기간)
1) 본 협약의 기간은 **2021년 4월 23일부터 2021년 4월 26일까지**이며,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협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한다.
2) 본 협약의 체결일은 2021년 4월 23일이지만 양당사자들은 본 협약의 효력이 2021년 2월 8일로 소급하여 발생하는데 동의하며 2021년 4월 26일에 효력이 만료된다.

제 4 조 (업무협약 대상 및 개별계약)
1) "을"은 "갑"이 지정한 용역업무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갑"이 지정한 일시에 "갑"에게 제출한다.
2)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개별 용역계약은, "갑"의 개별 용역의뢰 내역, "을"의 견적제출 및 "갑"과 "을"의 개별 용역비용, 일정합의 등 제반 개별 계약에 관한 일체의 상호 간 전달문서로 갈음한다.
3) 업무 협약 대상은 **싱가폴 퀵서베이 온라인 실사 진행**으로 한다.

제 5 조 (용역 대금의 지급)
1) 본 협약에 의해 "을"이 수행하는 용역업무에 대한 대가(이하 "용역비"라 한다)는 일금 이백사십오만원정 (₩2,450,000/ 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2) "갑"은 상기 제1 항의 "용역비" 이백사십오만원정 (₩2,450,000/ 부가세 별도)은 본 계약서 제4조에 의한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검수 완료 후 "을"에게 세금계산서 받은 날의 익월 말일까지지급한다.
단, "갑"은 지급 건에 대하여 "을"이 제출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물에 따라 지급을 보류 또는 차감할 수 있다.

제 6 조 (용역 결과물의 제출 및 검수)
1) "을"은 이 협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한 후 "갑"에게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용역 완료일 (4월 26일)에 맞춰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이 "을"의 용역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을"은 반드시 "갑"이 요구하는 용역 수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보완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추가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이 개별 용역업무이행 의무를 지체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용역계약 대금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개별용역계약 이행지체가 "을"의 귀책 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7 조 (협약의 해지)

1) "갑"은 다음 각 항의 경우 본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의 본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갑"이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기타 협조요구에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
   ③ "을"이 개별용역업무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하기까지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④ "을"이 "갑"의 사전 승인 업이 개별용역계약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⑤ 부득이한 사유로 쌍방이 본 협약을 상호 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한 경우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해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지 시점에 이행 중인 개별용역계약으로 기 수령한 금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단, 상기 제1항 5호의 사유로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행 중인 개별용역업무의 정산서 및 작업물을 제출하여 "갑"의 검사를 받아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 8 조 (변상의 책임)

"을"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개인정보보호)

본 협약 이행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할 경우 협약 해지와 피해보상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제 10 조 (정보보안 및 유출금지의무)

1) "을"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에 대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유출하지 않을 의무를 지니며 "을"의 직원 또는 대리인도 본 의무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2) "을"은 "갑"에 관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본 협약관계가 어떠한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갑"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한다.

제 11 조 (지적재산권)

본 협약에 의하여 제작된 제작물 및 각종 자료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 12 조 (관할법원)

본 협약이 포괄하는 개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분쟁, 의견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해결하기로 하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률적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 (서명, 날인)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계약내용을 신뢰와 성실을 다하여 이행할 것을 협약하고,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각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21년 4월 23일

("갑")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12, 3층
(역삼동, 허바허바빌딩)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 준 반 (인)
조 우 철 (인)

("을")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7-8, 4층
(여의도동, 엔에이치농협캐피탈빌딩)
다이나타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이사 사무엘 스콧 앤더슨 (인)